

의안번호	제144호
의결연월일	2021. 09. 28.

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09월 16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1년 09월 16일
- 다. 상정일자 : 2021년 09월 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토지정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·고도화하고,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「도로명주소법」이 전부개정(2020. 12. 8. 공포, 2021. 6. 9 시행)됨에 따라 「도로명주소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」
⇒ 「논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(제명 변경)
-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 비용을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여 관공서와 제3자와의 신청 구분을 명확히 함.(안 제8조)
-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.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